

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요

□ 법적근거 및 목적

-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7조*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을 종합·조정

* 식품안전정책을 종합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둔다.

□ 구 성

- (위원회) 위원장(국무총리), 정부위원 9명, 민간위원 10명 등 20명

* 정부위원 : 기획재정부장관·교육부장관·법무부장관·농림축산식품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환경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·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

* 민간위원 :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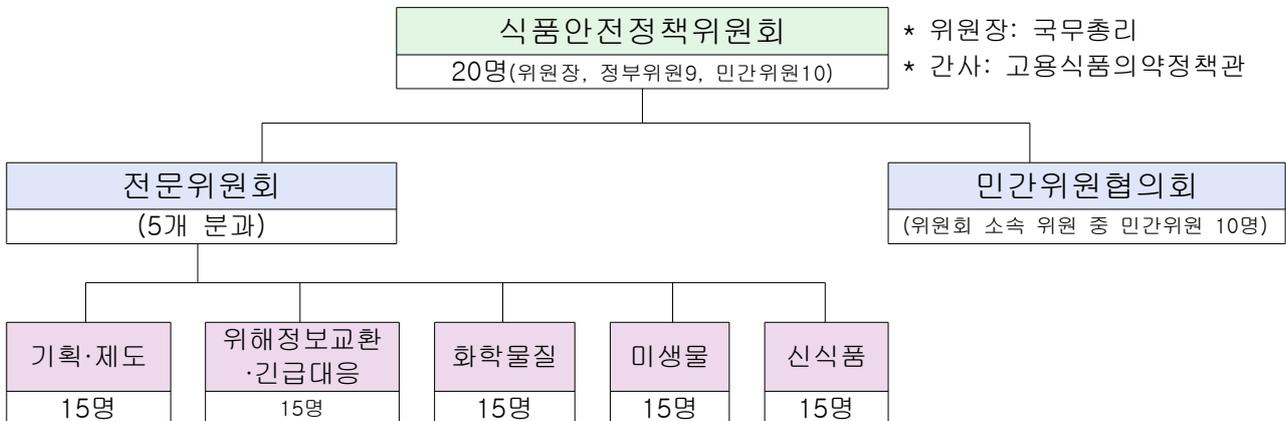
- (전문위원회) 분야별 5개 분과로 구성·운영

* 위원회 민간위원은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참여

- (민간위원협의회) 위원회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

- (사무기구) 4명(과장1, 사무관2, 사무보조1)

<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체계 >



□ 역 할

○ **(위원회)** 식품안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·조정(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2항)

- ▶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▶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- ▶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·규격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- ▶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
- ▶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
- ▶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○ **(전문위원회)**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 수행

전문위원회	주요 심의사항
기획·제도	○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, 식품안전관리체계 ○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, 기준·규격
위해정보교환·긴급대응	○ 위해정보 관리시스템 ○ 소비자·업체·정부기관간 정보교환,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
화학물질	○ 식품첨가물, 기구 및 용기·포장 ○ 중금속, 독소류, 환경유래오염물질 등 비의도적 오염물질 ○ 농약, 동물용의약품 등 의도적 사용물질
미생물	○ 미생물, 식중독균, 바이러스 등 ○ 가축전염병, 인수공통전염병
신식품	○ 유전자재조합식품(GMO), 방사선, 비료·사료 등

○ **(민간위원회의회)** 효율적인 안전심의를 위해 위원회 심의안건 사전 검토

□ 임 기 : 2년(연임 가능)

□ 시 행 일 : 2008. 12. 14.